

문경시의회 공고 제 2016-2호

「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문경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2월 1일

문 경 시 의 회 의



문경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(김지현 의원 대표발의)

1. 개정이유

- 가. 법제처 ‘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안’을 수용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정과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규정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,
- 나.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근거 법령을 정정하여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1조)
- 나. 위촉기간 연장일수의 상한을 10일로 규정함(안 제4조제2항)
- 다. 현행 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중복조문이고, 제7조제2항의 지방공기업의 결산검사는 회계감사로서 같음한다는 규정은 결산검사 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이를 삭제함
- 라. 결산검사 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함(안 제7조 신설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불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6년 2월 6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장, 문경시 중앙로 5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50-803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제출 방법
 - 1) 전자우편: pak517@korea.kr
 - 2) 주 소: 문경시 중앙로 50,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
 - 3) 팩 스: 054-550-8039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내용	의 견	비 고

문경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문경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제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) 결산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 한다)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.
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위원은 문경시의 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이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문경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가 선임한다. 다만, 1명은 문경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.

② 검사위원은 문경시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이 추천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③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

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④ 검사기간 중 감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,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⑤ 의장은 선임된 감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.
제4조(위촉기간) ① 감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② 감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문경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상근 직원
2.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·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

제6조(대표위원) ① 감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,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. 다만 감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위원을 지명한다.

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감사위원의 위촉 해제) ①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감사위원의 위촉이 해제된다. 이

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해당 감사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.

1.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2.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3. 감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

경우

② 의회는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2. 감사위원의 직무를 거부,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
3. 그 밖에 의회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감사위원의 출석·답변)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감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.

제9조(검사협조) 감사위원은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실제비용 보상) ① 시장은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실제비용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.

③ 실제비용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감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에 한정하여 보상한다. 다만, 감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감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.

④ 제3항의 기간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이 포함된다.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】 지급기준(제11조 관련)

지 급 기 준

구 분	금 액
수 당	100,000원
여 비	의원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 5의 기준에 따르되, 의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한다.

【별지 서식】 위촉장(제3조 관련)

위 촉 장

홍 길 동

문경시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

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(일간)

문경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20 년 월 일

문 경 시 의 회 의 장 (인)